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검 토 보 고

〈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 규정 제정 〉

■ 조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98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배경 및 취지	5
2. 조문별 검토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조국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4. 6. 28.
3. 회 부 일: 2024. 7. 1.

II. 제안이유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사생활의 모든 것을 담고 있을 정도로 그 분량이 방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무한대로 그 내용과 분량이 확장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육안으로 파악되지도 않으므로 파일을 열어 탐색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범죄 관련 정보를 특정하여 수집할 수 없음.

이처럼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유체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압수수색에 있어 전자정보를 종래 유체물 증거와 달리 취급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탐색·선별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탐지되어 수집될 수 있고, 이러한 사태는 압수수색영장을 일반영장으로 변모시켜 포괄영장 금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상 영장주

의 원칙을 허물어 버릴 위험마저 존재함.

이에 종래 주로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을 규율하여 온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대하여 이러한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법으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전자정보는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색·검증만으로 재판 및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압수·수색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문

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등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선별압수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복제본이나 원본을 반출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 또는 신청할 때에는 현장 선별압수 대신 복제본 또는 원본 반출이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 시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 등 선별계획, 예상 분석기간, 압수할 전자정보의 종류, 압수할 전자정보의 저장 또는 송수신 기간 등을 특정한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

마.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 대상의 특정, 집행계획 검토 등 영장 발부 요건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정하여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등을 심문하는 등 사전대면심문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수사기관등은 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하여 정보저장매체 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하여야 하며,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개별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원본과의 동일성과 전자적 증거의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8조).

사. 수사기관등은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압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무관정보”)를 48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자는 형사 처벌되고 이러한 전자정보는 증거로 할 수 없음(안 제9조 및 제15조).

아.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 피압수자 그리고 정보저장매체등에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함께 혼재되어 있는 무관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탐색·출력·복제 등을 배제할 사생활의 비밀 기타 정당한 인격적 법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실질적 피압수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및 검증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안 제10조).

자.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등 제3자 보관정보와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절차를 적용·준용함(안 제11조 및 제12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배경 및 취지

제정안은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별도의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 그 자체를 압수할 수 있음(현행법 제106조제3항, 제219조).¹⁾

1)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기 전 구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압수의 대상으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만 규정하고 있었고, 제199조제1항 단서는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강제처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음.²⁾

이에 따라 종래 ‘유체물’이 아닌 ‘전자정보’ 자체가 우리 형사소송법 해석상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는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효시적 의미를 지닌 대법원 2011. 5. 26.자 2009도1190 결정³⁾은 ‘정보저장매체’가 아닌 ‘전자정보’ 자체가 압수 대상임을 전제로 선별압수 원칙 등을 제시하였음.

2)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기 전) 제106조 (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단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3) [대법원 2011. 5. 26.자 2009도1190 결정]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이후 2011. 7. 18. 개정된 법률 제10864호 「형사소송법」은 제106조제3항을 신설하였는바,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이는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의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선별압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보가 압수수색 대상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임.⁴⁾

해당 개정 「형사소송법」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2020년 10월 7일 제정된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41조는 전자정보를 압수대상으로 명시⁵⁾하였음.

다만, 전자정보의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탐색·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이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 관련 정보가 탐지·수집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별압수의 원칙이 도입되었으나, 종래 ‘유체

4) 사법정책연구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2021. 5., p.223.

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물’을 기준으로 제정된 압수·수색 관련 조항들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 및 압수·수색에 대한 참여권 보장 등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됨.

이에 제정안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 시 선별압수의 원칙, 영장 청구 시 집행계획의 제출, 무관정보의 삭제 또는 폐기의무, 피의자 등에 대한 참여권 보장 등 특례를 마련하려는 취지인바,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 및 기존에 이루어진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하에서는 각 조문별로 검토하겠음.

2. 조문별 검토

가. 정의(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저장매체등”이란 컴퓨터용디스크, 휴대전화 그 밖에 이와 비슷하게 전자적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전자정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3. “복제본”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로 전부 복제한 것을 말한다.
4. “해시값”이란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하기 위한 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
5. “실질적 피압수자”란 정보저장매체등에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함께 혼재되어 있는 무관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탐색·출력·복제등을 배제할 사생활의 비밀 기타 정당한 인격적 법익을 가지고 있는 정보주체, 피의자, 피고인을 비롯한 사람을 말한다.

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음. “정보저장매체등”,⁶⁾ “전자정보”⁷⁾ 및 “해시값”⁸⁾의 경우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 관련 법령의 정의와 유사하게 정의한 것이고, “복제본”의 경우 정보저장

6)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체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선별압수 원칙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⁹⁾를 인용한 것으로 각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다만, 제정안은 “실질적 피압수자”를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함께 혼재되어 있는 무관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탐색·출력·복제 등을 배제할 사생활의 비밀 기타 정당한 인격적 법익을 가지고 있는 정보주체, 피의자, 피고인을 비롯한 사람”으로 정의하여 압수·수색 및 검증영장 집행 시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참여권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시한 “실질적 피압수자”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정안 제10조(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진술)에 대한 검토에서 다루도록 하겠음.

나. 수색과 압수의 분리 및 선별압수·수색 원칙(안 제3조 및 제4조)

제3조(전자정보의 수색과 압수의 분리) 전자정보는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색·검증만으로 재판 및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정보의 선별압수·수색 원칙) ①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이를 준용하는 제219조 등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압수·수색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9) [대법원 2011. 5. 26.자 2009도1190 결정](위 각주 3 판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관련된 정보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등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제정안 제3조는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하여 수색·검증만으로 재판 및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하도록 하였음.

또한, 제정안 제4조는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①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출력·복사하도록 하되, ② 해당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③ 해당 방법도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을 직접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피압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가장 작은 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해당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

거나 압수·수색·검증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큰 방법을 단계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강제수사 비례의 원칙¹⁰⁾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구현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이 도입될 경우 피압수자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수사준칙 제41조 또한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전자정보의 선별압수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10)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안 제3조는 압수와 수색·검증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색은 압수할 물건을 찾기 위한 수단이고 압수의 전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수색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전자증거를 발견하고 이후 해당 전자증거를 압수대상물로 특정하여 다시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후 압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수색 후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영장발부 시 법원의 사전규제(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5조(영장청구 시 집행계획 제출과 심리)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이 법원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등”이라 한다) 영장을 청구 또는 신청할 때에는 현장 선별압수 대신 복제본 또는 원본 반출이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 시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 등 선별계획, 예상 분석기간, 압수할 전자정보의 종류, 압수할 전자정보의 저장 또는 송수신 기간 등을 특정한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압수·수색등 영장청구를 받은 법원은 범죄의 태양과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와 중요성, 압수물이 인멸·훼손될 위험성 유무, 압수에 의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압수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③ 법원은 압수·수색 청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방법 및 압수대상을 특정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현장 선별압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보이는 사정이 없는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압수자의 특성, 정보의 종류, 긴급성의 정도 등

복제본 또는 원본 반출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압수방법을 현장 선별압수 또는 복제본 반출로 한정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6조(사전대면심문) ① 법원은 압수·수색등의 필요성, 대상의 특정, 집행계획 검토 등 영장발부 요건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정하여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등을 심문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압수·수색등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대면심리의 필요성, 사생활 및 기본권의 침해 정도,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및 수사의 보안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심문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보정명령) ① 법원은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검색어, 검색기간 등을 통한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색어, 검색기간 등을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명령에 수사기관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 흠결을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범죄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 등을 다수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정보의 결합이나 저장으로 인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혐의와 무관한 별건 정보의 압수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선별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됨.¹¹⁾

특히, 전자정보의 압수 방법은 안 제3조의 규정과 같이 ①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출력·복사, ② 정보저장매체등의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반출 ③ 정보저장매체등의 직접 반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압수방법에 따라 사생활의 자유 등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됨.

11) 박병민·서용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21. 3. 16p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이하 “사전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음.

제정안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사전규제로 ① 영장 청구 시 복제본 또는 원본 반출 사유, 검색어 등 선별계획, 전자정보의 종류 등을 특정한 집행계획의 제출(안 제5조제1항), ② 압수방법 및 압수대상을 특정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안 제5조제3항·제4항), ③ 압수·수색영장 심리 시 대면심문 제도(안 제6조)를 각각 도입하고자 하는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법원의 관여가 확대됨으로써, 피압수자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및 압수수색의 실효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안 제5조제1항은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 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 등 선별계획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실제 압수·수색 시 오탈자나 은어 사용 등의 사유로 범죄사실과 관련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이후 변경된 검색어로 재차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또한, 안 제5조제3항·제4항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선별

압수의 예외가 되는 사유를 미리 소명하도록 하고 영장발부 시 집행방법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별압수의 예외가 되는 “선별압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압수·수색의 집행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질 경우, 앞서 언급한 경우와 동일하게 범죄사실과 관련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여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안 제6조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에서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발부 여부 검토 시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경우 수사상황이 알려짐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법원의 사전규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압수대상물에 대한 증거인멸 위험을 방지할 수단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로, 전자정보의 멸실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자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983호, 소병훈 의원안)이 제21대 국회 중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바 있음.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법원의 사전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제정안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① 검색어 등을 특정한 구체적 집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현장상황에 대처하기 곤란하고 불완전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②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대면심문제도를 도입할 경우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경찰청은 ① 파일명에 오탈자, 은어가 포함될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 ② 압수·수색 전 압수할 전자정보의 종류 특징이 곤란하고 분석기간 또한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사전에 집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③ 대면심문제도 도입 시 수사의 밀행성 및 신속한 수사에 차질이 생겨 국민 편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라. 전자정보의 선별(안 제8조)

제8조(전자정보의 선별) ① 수사기관등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개별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원본과의 동일성과 전자적 증거의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반출한 때에는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원본을 개봉하여 복제본을 획득하고, 그 경우 원본은 지체 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8조는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원칙을 규정한 조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동조 제3항 및 제4항은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에서 복제본을 획득하는 절차의 참여권자 및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할 상대방을 “피압수자등”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안 제4조제3항은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¹²⁾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사람을 “피압수자등”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여권자의 경우 공무소의 책임자, 주거·가옥의 주거주 또는 간수자 등 압수·수색 대상물의 소재지에 대한 관리권 내지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일 뿐 압수·수색 대상물 자체의 관리권 내지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아니므로 압수·수색 대상물인 전자정보의 선별 절차에 참여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음.

「형사소송법」 제129조¹³⁾는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할 상대방으로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

12) 「형사소송법」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3)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자로 “검사, 피압수자, 실질적 피압수자 및 변호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안 제8조상 절차의 참여권자 및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할 상대방 역시 피압수자, 변호인 등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마. 무관정보의 삭제·폐기 등(안 제9조)

제9조(무관정보의 삭제·폐기 등) ① 수사기관등은 제8조제4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전자정보를 48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에게 무관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의 취지를 통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전자정보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15조(무관정보 미삭제·폐기죄)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관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 자와 무관정보를 누설하거나 누설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안 제9조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완료되어 안 제8조제4항의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 작성이 완료된 경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15조는 안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관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누설 또는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였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상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점(「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단서)을 고려할 때, 압수대상으로 확정된 전자정보를 제외한 무관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토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고, 대법원 판례도 무관정보의 삭제·폐기 의무를 인정¹⁴⁾하고 있음.

다만, 피압수자등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안 제4조제3항에 대한 논의와 동일하게 피압수자, 변호인 등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안 제15조가 무관정보를 단순히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것이 죄형균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안 제15조에 대하여 경찰청은 무관정보의 미삭제·폐기는 단순 실수 또는 미숙한 업무처리에서 비롯될 수 있어 무관정보를 누설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수집 정보의 보유·관리 관련 다른 법률의 벌칙 조항과 비교하여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4)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이하 ‘복제본’이라 한다)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바.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진술(안 제10조)

제10조(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진술) ① 검사, 피압수자, 실질적 피압수자 그리고 변호인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및 검증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제1항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 그리고 제1항에 규정한 자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하거나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압수·수색의 집행에 참여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집행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경우 수사기관등은 집행개시 전에 현장 선별압수의 원칙, 임의제출의 거부가능성 등 압수·수색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고 압수·수색영장 사본, 참여확인서 및 압수·수색 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등은 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을 포함하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제1항에 규정한 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여야 한다.

⑤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자가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안 제10조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시 피압수자 등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임.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21조¹⁵⁾ 및 제122조¹⁶⁾와 대응되는 것으로,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당사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 보임.

15)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16)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참여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안 제10조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시 참여권자에 “실질적 피압수자”를 포함하면서, 안 제2조제5호는 실질적 피압수자를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함께 혼재되어 있는 무관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탐색·출력·복제 등을 배제할 사생활의 비밀 기타 정당한 인격적 법익을 가지고 있는 정보주체, 피의자, 피고인을 비롯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실질적 피압수자”란 종래 대법원 판례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권자의 범위에 대하여 판시하면서 도입한 개념으로,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여 실질적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피의자등의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여권을 인정한 것임.

그런데 제정안이 정의한 “실질적 피압수자”는 무관정보에 대하여 인격적 법익을 가지고 있는 정보주체 전반(이하 “관련 정보주체”)을 포함하고 있어 대법원이 판시한 실질적 피압수자의 개념과 상이한 것으로,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에서 실시한 개념을 원용한 것으로 보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의 귀속 주체가 되는 실질적 피압수자는 압수·수색 당시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지배·관리하면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정보저장매체에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함께 혼재되어 있는 무관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탐색·출력 등을 배제할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 7453 전원합의체 판결 중 반대의견

피의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정보저장매체 내 정보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 등 기타 인격적 법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까지 실질적 피압수자의 개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전자정보의 결합·저장성을 고려할 때, 무관정보의 관련 정보주체가 누구인지는 압수·수색의 집행 전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그 범위 또한 무한히 확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절차의 참여권자에 관련 정보주체를 포함할 경우 보다 신중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해당 대법원 판례의 반대의견도 무관정보에 대한 인격적 법익을 갖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바, “압수·수색 당시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지배·관리하면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는 사람”일 것을 전제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피압수자 등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참여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정안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현재 상황에서도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준항고 등을 통해 피의자 등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사. 기타 절차의 특례 등(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1조(제3자 보관정보의 압수·수색) 수사기관등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등 제3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 발부, 집행하는 경우에도 제3조 내지 제10조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임의제출물의 압수) ① 수사기관등이 임의제출물인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경우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피압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임의제출에 앞서 피압수자에게 범죄 혐의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은 전자정보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실질적 피압수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8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13조(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이 법을 위반하여 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에게 참여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및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제3자 보관정보의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물의 압수의 경우 적용되는 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13조는 이 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을 규정하였음. 안 제14조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및 검증과 관련하여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함.

안 제12조제3항은 전자정보가 임의제출되는 경우에도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실질적 피압수자”의 정의와 관련한 앞선 논의와 동일하게 무관정보의 관련 정보주체가 누구인지는 압수·수색의 집행 전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그 범위 또한 무한히 확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임의제출물 압수 절차의 참여권자에 관련 정보주체를 포함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63